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2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박정의원안 제3조의2 신설) ..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1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박정 의원안 제3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u>

나. 점토의견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¹⁾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한 배임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²⁾에 한하여 배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배임죄 인정여부를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이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배임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정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또는 취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여 노사상생경영을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조문이 제22대 국회에서 의결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로 인해 부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02444호)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해당 조문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면책을 거부하여 노사간 협의가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노사자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행 판례가 배임의 고의성을 기준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규정 신설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3) 아주경제, 「대우조선 사태로 본 노조과업 때 손배 방지...배임될까」, 2022.7.26.

즉,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5